

안산 한신더휴 |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출서류 안내

구분	서류 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(해당자)			
공동 서류	○		서약서, 개인정보수집 · 이용동의서	본인	• 견본주택 비치
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사항 ·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-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~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세대원	•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-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-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~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
		○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-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-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
노부모부양 특별공급	○		가점점수 산정기준표	본인	• 견본주택 비치
		○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•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-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		○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•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-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피부양 직계비속 직접 발급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“상세”로 발급 •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,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자녀	•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“상세”로 발급
		○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피부양 직계존속	• 직계존속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/기록대조일 생년월일 ~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
		○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자녀	• 직계존속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/기록대조일 생년월일 ~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
부적격동보를받은 자		○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해당 주택	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
		○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	해당 주택	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,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• “소형 · 저가주택 등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제3자대리인 신청시추가서류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,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대리 불가
	○		위임장	청약자	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• 견본주택 비치
	○		신분증, 인장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
※ 상기 제증명서류(신청자 구비서류)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0.15.)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처리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 ※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(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함)
 ※ 상기 제증명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체표기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 ※ 주민등록표등 · 초본 발급 시 ‘세대주 성명 및 관계’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‘세대주 성명 및 관계’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 ※ 해당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.
 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존 · 비속 포함)로 간주합니다.

사전 서류 제출 후에도 추가적인 확인 필요 시,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